

# 기안용지

분류번호 문서번호	시습 442-408 (전화번호 725-6593)	전결유형 국 장	4 장	조 1 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83. 9.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한상경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1.5em; font-weight: bold;">83. 9. 24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1.5em; font-weight: bold;">고시제 4</div>		
시행일자	83. 9.			
보존연한	영 구			
보도시계획국장	전결			
조시습계획과장	협	법무담당관	[필사필]	
관시습계획1계장	조			
기안책임자	조근호	83. 9.	박희진	
경유	각안참조		발신	시 장
수신			통계	검월 1983. 9.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제목	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) 결정			
제 1 안				
수신	내부 결재			
제목	동 건			
<p>1. 당시 관내 도봉구 율계동 424일대 394,965㎡를 서울시고시 제 73호 (74. 6. 4)로 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)을 결정 및 지적승인한 데 대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시설 결정이 요청되었기</p> <p>2.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동시행령 제 6조 및 7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고시하고 재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
첨부	관캐서류 1건.			
제 2 안	고 시 안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		
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) 결정				
1. 서울시고시 제 73호 (74. 6. 4) 및 서고시 제 149호 (78. 4. 11) 호				
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) 결정 및 변경결정된데 대한 세부시설을 도시계획				

법 제 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청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급한다.

1983. 9.

서울특별시

유통업무설비 (세부시설) 결정조서

시설명	위치	면적(㎡)	세부시설 (금회결정)	
			명칭	면적(㎡)
유통업무설비 (세부시설)	도봉규율계동 424일대	394,965	도매시장	5,100
			철도화물역	189,530
			창고, 화적장, 저장시설	63,515
			화물적치용건물	136,820
			기타유사시설및사무실	

0. 별첨도면포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제 3안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도시계획과장

제목 동 건

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의 세부시설을 별첨도서와 같이 결정고시하고 보고합니다.

첨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. 끝

제 4안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 의뢰합니다.

가. 게재구분 : 조시



나. 게재거명	: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 세부시설결정
다. 법규근거	: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3조
첨부	고시문사본 2(1)매 끝
제 5안	
수신	도봉구청장
참조	도시정비과장, 건축과장
제목	동 건
<p>1. 귀구 관내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시설)에대한 세부시설을 별첨          도서와 같이 결정고시하고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         인에게 보일 것이며,</p> <p>2. 도정 442-12384호 (83. 4. 14)로 요청한 율계동 66-2입대는 사업          시행허가시 녹지로 조성토록 할 것이며, 본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공해          방지 및 교통 <del>지장없도록</del> <del>발생</del> <del>방지</del> <del>대책</del> <del>수립</del> <del>시행</del> <del>토록</del> 하고</p> <p>3. 유통업무설비 부지를 동서로 횡단토록 고시된 폭 20<sup>m</sup> 도로 개설          에 지장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후 시행토록 함 것.</p>	
첨부	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. 끝
제 6안	
수신	철도청장
참조	건설과장
제목	동 건
<p>1. 건설 415-645(83. 9. 8)호로 요청하신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          비) 세부시설결정을 별첨 도서와 같이 고시하고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         바라며,</p> <p>2. 시설 442-242(83. 6. 10) 및 시설 1552.4-484호 (83. 6. 28)로          기 협의한바 있는 도봉구 율계동 66-2입대는 사업시행시 녹지대로 조성하시고</p> <p>3. 본 도시계획사업(유통업무설비)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공해소음</p>	

면지, 미관) 방지 및 교통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

4. 유통업무설비부지를 동서로 횡단토록 고시된 폭 20<sup>m</sup> 도로 개설 계획에 지장 없도록 사업시행 전에 당사와 협의후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1부. 끝

